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33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이성운
김원이 · 박수현 · 윤준병
박지원 · 이개호 · 김영진
김영배 · 전종덕 · 조인철
송옥주 · 서미화 · 문금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로 이를 개선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갖추어 필요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준해양사고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준해양사고 통보자의 확대 및 활성화

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인과분석을 통해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심판과 관련하여 보존된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심판 업무뿐만 아니라, 재결에 따른 교훈 전파, 준해양사고사례 분석·배포, 통계에 기반한 사고 경향과 감소방안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고 예방의 홍보 등을 해양안전분야에 전문성, 대국민 접근성과 다양한 이행수단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심판에”를 “제2항에 따라 해당사건의 심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비상임심판관 위촉 절차, 연임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8조의3의 제목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과 해양사고 증거조사·분석시스템(이하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

사고정보시스템”을 각각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으로 한다.

제10장에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업무의 위탁) 중앙심판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임심판관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각급 심판원장이 이미 위촉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시작일은 이 법 시행일부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② (생략) ③ <u>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u> <u><신 설></u> ④ · ⑤ (생략) <u><신 설></u>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라 해당사건의 심판에 -----</u> ---. ④ <u>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u>비상임심판관 위촉 절차, 연임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생략) <u><신 설></u> ② · ③ (생략)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8조의3(<u>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u>)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88조의3(<u>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의 구축 · 운영</u>) ① -----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

-----정보의 효율적 관리
와 제35조에 따라 보존된 증거의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과 해양사고증거조사·분석시스템(이하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

② -----
--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

-----.

③ -----

----- 해양사고정보시스템등-----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해양사고정보시스템</u>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 -----. ④ ----- ----- <u>해양사고정보시스템</u> 등----- ----- --. <u>제88조의4(업무의 위탁) 중앙심판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